

CESCO Food Safety NEWSLETTER

2018. January _ Vol. 74

발행처 _ (주)세스코 식품안전연구소

주소 _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주) 세스코 터치센터

대표번호 _ 02-2140-0288 http://cescofood.co.kr

NEWS 식품안전 주요 NEWS

경기도 특사경, 24일부터 설 명절 다소비·건강 기능식품 등 집중단속

- '18.1.24~2.2, 건강기능식품, 설명절 다소비식품, 축산물제조·판매업소 등 480개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떡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48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급성장 중인 유산균 함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겨울철 식품인 붕어빵 제조업소, 명절 성수품인 떡과 축산물 제조업소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경기도 특사경 소속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3명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식용불가 원료 등 부정·불량식자재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등 안전성 미확보 식품 보관·진열·판매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 등이다. 특히 유산균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거검사를 통해 유산균 미함유 또는 유산균 함유량 미달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도는 부정불량식품 사용 등 중대 식품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다소비 식품뿐만 아니라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건강위해식품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출처 :경기도청, 1월 19일)



CESCO 세스코 터치센터 전경



세스코 식품안전서비스

3,021가지의
토털 식품위생 솔루션

세스코 식품안전 위생진단 서비스 (제조업/접객업)

식품안전컨설턴트가 정기적으로 고객사업장의 식품/원료/조리도구 위생부터 현장시설/설비의 안전성까지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컨설팅 하는 서비스입니다.

7



대 식품안전관리 항목으로



국내외 식품위생법 및 관리기준 적용한 위생진단 서비스



시설/설비/개인위생 등의 위생관리 포인트 체크



식품위생 관리방법 및 솔루션 제공

식품위생 규정 반복등 위반업체 집중 관리

- 288곳점검 결과 39곳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88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39곳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17년 1월부터 7월까지 식품 위생 규정을 위반한 33곳 ▲최근 3년간('14년~'16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소 중 유통기한 및 자가품질검사 미준수 등 주요사항을 위반한 65곳 ▲영업자가 식품 위생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190곳 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8곳) ▲관련서류 미작성(6곳)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제재와 벌칙

| 위반 내용 | 행정제재 | 벌칙 |
|-----------------------|--|------------------------|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전부미실시) 품목제조정지 1개월, (50%이상 미실시) 품목제조정지 15일, (50%미만 미실시) 시정명령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생산기록 및 원료수불 미작성 | (생산기록 미작성) 영업정지 15일, (원료수불 미작성) 영업정지 5일 | |
|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월 25일)

2017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3,951개소 적발!

-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위반이 절반 차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작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대상 230천 개소를 조사하여 위반업소 3,951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업체수는 '16년도 대비 7.8%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2,522개소(2,999건)를 적발하였으며, '16년 2,905개소(3,408건)에 비해 13.2%(12.0%) 감소하였다. 원산지 위반이 감소한 원인은 과징금·의무교육 등 강화된 제도 시행, 취약분야 선택·집중 단속 및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의 지속적인 개발로 업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99건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982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산으로 272건, 멕시코산을 국산으로 142건, 호주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건이었으며,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멕시코산·호주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감시 기능 활성화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하여 파급효과가 큰 대형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발간·활용을 통해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월 24일)



표시 검증/작성 서비스



‘표시 리스크’ 관리 능력 향상

- 최신 정책, 법령 관리 통한 최적의 ‘제품 표시’ 유지
- 잦은 인력 변화에 따른 법규 리스크 관리 역량 유지
- 명확한 원인 파악을 통한 대응논리 및 소명절차 지원
- 전문교육, 영양성분 분석까지 ‘One-stop’ 서비스 연계

【 표시 검증 】

- 표시사항, 셀링포인트
- 솔루션 제공

【 현장 표시 검증 】

- 표시사항, 셀링포인트
- 현장방문, MD당 20제품

【 표시 작성 】

- 표시사항, 영양성분표 작성 및 솔루션 제공

【 Online/광고물 검증 】

- 셀링포인트/체험기/댓글 등 허위,과대 광고 검증

제품 출시 이전부터 이후까지 모든 표시 관련 법규 기반의 체계적인 제품표시 리스크 관리

국민안전-국민건강 주제 2018년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1.23.(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오늘 업무보고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줄이고, 정부역량강화를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각 부처는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서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책임 강화와 상시적인 시스템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연두업무보고에서는 건강 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One Health)가 논의되었다. 이는 사회 다변화, 세계화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안전 위협 요인도 다양해져 개별적·분절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One Health 대응 체계 강화 방안으로서, △평시 부처 간 소통 및 정보 공유 강화, △이슈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 및 역학조사, △사후 제도 개선, 보상, 평가 및 환류 등 각 단계별 협력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 먼저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의 기본 안전부터 확실히 지켜나갈 예정이다.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정용 계란은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거친 후 유통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유해물질 분석·평가·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긴급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위기판단과 현장대응을 이루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눈높이에 맞는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2)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은 보다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공공급식 안전·영양관리를 지원하고, 혼밥·외식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갈 예정이다. 생리대·화장품 등의 관리를 강화하여 여성건강 안심을 확보할 계획이다. 3) 국민과 함께 식·의약 안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민들이 실제로 불안을 느끼는 제품을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국민 청원검사제’를 운영하여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안전의 질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 생산단계부터 안전.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계획이다. 첫째, 토양·물부터 농약까지 농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오염 우려 농경지의 중금속 잔류조사를 확대하는 등 토양과 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판매인 자격요건 강화,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등 PLS 도입을 준비한다.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부실 기관, 위반 농가 제재를 강화한다. 2)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한다. 공장식 밀식사육 개선을 위해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밀도를 적용하고, 기타 축종으로 확대해 동물 복지를 향상시킨다. 가금 밀집사육 지역은 농장간 거리가 500m 이상 되도록 재배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살충제 관리 강화, 산란계(대규모) 농장 HACCP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으로 축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 3) 건강. 안전. 안심으로 소비자. 생산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국민 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 마블링 중심의 등급 기준을 육색. 지방색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해양수산부는 1) 국민소득 3만불과 1인당 수산물 소비 세계 1위(60kg)에 걸맞게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2) 친환경 양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육수 정화처리시설, 고품질 배합사료, 우수종자를 개발·보급하여 질병발생의 사전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3)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전성검사 강화, 수산물의약품 오·남용 방지, 수입 수산물 관리 강화를 통하여 출하 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수산물 안전인증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환경부, 1월 23일)



세스코 시험분석 서비스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 HACCP 위해요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제100호(식품), 제59호(축산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자가품질검사 서비스

식품/축산물 제조.가공,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사



첨단 분석장비 및 전문인력과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보증 하는 국가공인검사기관

국민의 삶이 우선인 나라, 식약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 업무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 안전에서 출발 하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였다. 올해 업무계획 주요 내용은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생활 속 불안요인 사전 예방 ▲의약품 등의 공공성 강화 ▲맞춤형 규제 혁신성장 선도 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농·축·수산물부터 안전관리 강화) 가정용 계란에 대해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농약·항생제 등 잔류물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농·축·수산물 요인 집중 관리
 - 1) 산란계 농장에 대해 안전인증기준(HACCP) 의무화(12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가정용 계란에 대해 세척·잔류물질 검사 의무화(4월)
 - 2) 무분별한 농약·동물용의약품 사용 방지를 위하여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농산물('19년~)뿐만 아니라 축·수산물로까지 적용 확대('21년~) 추진
2. (식품 트렌드 변화 대응 강화)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등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늘어나는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적극 대응
 - 1) 가정간편식(즉석섭취식품),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HACCP 의무화 지속 추진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에 임산부·환자용 식품 의무적용(12월)
 - 2) 상대적으로 위생이 취약할 수 있는 배달·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 강화(연중)
 - 3) 온라인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이버 감시기능 통합·운영(2월)
 - 4) 최근 3년간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로 부적합을 받거나 국내·외 언론 등에서 이슈가 된 수입식품에 대해 집중적인 현지실사 실시(연중)
3.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일관된 식품사고 대응과 상황 관리를 위하여 식품안전 긴급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민관 협력도 확대하여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 1) 수거검사 부적합률, 수출 부적합 이력 등을 감안하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수거 대상으로 선정하는 ‘선별 시스템’ 구축(12월)
4. (유해물질·제품 사전 예방관리 강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해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
 - 1) 공산품인 화장지, 1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4월)
5. (취약계층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의약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1) 어린이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을 위하여 학교 내 커피판매 금지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을 성인용과 구분하여 엄격하게 관리(7월)
6. (국민 참여 및 소비자 보호 확대) ‘국민 청원 검사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를 확대하는 등 국민 참여와 소비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1)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 청원 검사제’ 도입(3월)
 - 2) 식품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3) 소비자 친화적 식품 표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나트륨 함량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다른 제품 대비 비율 표시에서 1일 나트륨 권장량(2000mg) 대비 비율 표시로 개선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월 24일)

HACCP 컨설팅 서비스



신뢰성
다수의 정부 인증 보유



고객 지향
고객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한
최적의 결과물 도출



전문성
국내 최고 전문가 그룹 및
컨설팅 실적 보유

- 식품 HACCP 컨설팅 등록 업체 (식약처)
- 축산물 HACCP 컨설팅 등록 업체 (식약처)
-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식약처 제10호)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식약처 제4호)
- 책임 컨설턴트 및 자문단 운영
- 품목 유형별 특성을 반영, 최적의 식품안전 시스템 구축
-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결과물 도출
- 컨설턴트 전원 상근 인력으로 책임감 있는 컨설팅 수행
- 고객 눈높이 반영 교육 및 지도 수행
- IPM(해충방제) 노하우 접목을 통한 시설 진단

⚠️ 주요 단속 정보

'18년 1~2월 점검 일정

| 점검명 | 점검 대상 | 점검기간 |
|-------------------------------------|---|--------------|
| ○ 굴, 광어 등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안전성 검사, 지도 점검 | 부적합 이력 양식장, 위.공판장 및 집하장 등 | 11.20~'18.1월 |
| ○ 설 대비 성수식품 범정부 합동점검 | 식품(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식육세트 등), 농.수산물 | 1.25 ~ 2.2 |
| ○ 발렌타인 데이 대비 점검 | 초콜릿, 과자류(캔디류) 등 제조/소분/판매 업체 | 2.5 ~ 2.9 |
| ○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합동점검(1차) | 인터넷 등 판매 제품 | 2.7 ~ 2.9 |
| ○ 영유아식 표방(표시.광고) 제조.판매 점검 | 이유식, 영유아곡류조제식 등 | 2.19 ~ 2.21 |
|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점검(1차) | 절임배추, 꽃감, 과메기, 멸치 등 | 2.22 ~ 2.28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산업 NEWS

식약처, '18 축산물위생분야식품 안전관리지침 발표

- 축산물위생관리 제도 및 지도 감독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 식품안전관리지침(축산물위생분야)'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지난 12월 28일 발표된 '2018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서 축산물 위생분야만 세부적으로 풀이한 것이다. 이 지침에는 ▲축산물 관련 영업허가 등 관리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관련 업무 ▲축산물 안전성 검사 ▲축산물 위생감시 중점 추진사항 ▲축산물 위생감시 요령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단속 ▲축산물 수거검사 ▲위해 축산물 회수 ▲축산물분야 통계관리 ▲'17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주요 개정내용 ▲식용란 잔류농약 부적합 시 조치사항 ▲업종별 위생감시 점검표 등이 수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 또는 '세스코식품안전' 사이트(▶[발표자료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월 8일)

HACCP 의무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0호)
cescofood.co.kr

HACCP 정기 과정 (2/21, 3/14, 3/26)

- 년 1회 HACCP 팀장이 반드시 이수 (법정 교육)
- 효율적인 HACCP 사후관리 방법, 요령 습득

HACCP 경영자 과정 (2/21, 3/14)

- HACCP 추진 시 최고경영자의 역할 인식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참석

HACCP 팀장 과정 (2/22~23, 3/15~16)

- 신규로 HACCP을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 교육
- '세스코 시뮬레이션센터'에서 현장 실습까지 한번에!

식품 전문 교육

HACCP 재인증&사후심사 대응 (3/28)

- 재인증/사후심사를 대응하기 위한 주요 tip 제공
- 위해요소분석, 검증 중점 이론교육에서 현장 실습까지!

식품공장 해충 방어와 이물분석 (3/27)

- 식품공장 유래 주요 해충의 특성을 알아보고 제어법 제공
- 주요 이물의 동정방법과 취약포인트 개선방안

표시연관 법규와 식품표시실습 (3/13)

- 표시 연관 법규를 한눈에 소개(법, 공전, 기타 법규)
- 표시기준을 이해하고 표시 근거와 영양성분표, 표시를 직접! 작성하고 오류사항도 찾아보는 실습을 한번에!

'환급'

'환급'

'환급'

“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 안심 환경 제공 ”

전략

“ 위생취약 및 사고 파급력이 큰 분야 중심의 점검 강화 ”

주요 전진분야 및 확대

[기획점검]

소비변화에 따른 식품사고 파급력이 큰 분야

-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 위생적취급기준, 온도관리기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자가품질검사, 유통기한 위.변조 등
- ▶ 프랜차이즈점, 패스트푸드점
: 부적합 원료, 조리장 위생불량,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 ▶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 냉장, 냉동 온도 준수, 유통기한 관리,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 ▶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업체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유통, 회수명령 위반 여부 등
- ▶ 특수영양식품 제조업체
: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비식용 원료 사용 등

[특별점검]

사회적 이슈, 위생 취약 우려시설 등

- ▶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 위생적 취급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유통기한 경과 원료 등
- ▶ 노인.장애인.아동.산모 이용시설
: 위생적 취급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 ▶ 애견동물카페
: 시설기준, 위생적취급기준, 유통기한 경과 원료
- ▶ 반복민원 및 고의.상습 위반업체
: 법령 재위반, 유통기한 위.변조,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등
- ▶ 농수산물 단순가공 업체
: 작업장 바닥 전처리, 표백제 등 유해물질 처리
- ▶ 원료성 농산물
: 백수오, 고추 등 생산.재배단계

[정기점검]

계절별 특정시기 사전 안전관리

- ▶ 설.추석 명절
: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햇과일, 쇠고기, 조기 등)
- ▶ 봄.가을 신학기
: 학교집단급식소, 학교매점, 학교 주변 분식점, 문방구 등
- ▶ 봄.가을 행락철 및 하절기
: 고속도로휴게소, 기차열, 공항, 국.공립공원, 유원지, 해수욕장 등
- ▶ 어린이날.발렌타인데이
: 과자류, 캔디류, 초콜릿류, 어묵, 떡볶이, 꼬치류 등
- ▶ 크리스마스.연말연시
: 케이크류, 빵류, 초콜릿류 등

기본 방향

- 소비자 위해 항목 및 기만행위 항목 위주 집중 점검
 -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 의약품, 사료용.공업용 원료 및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행위
 -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 영업정기 기간 중 영업 및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조 행위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 제품 판매 행위
 -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된 물 사용 행위
 -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 부적합 통보를 받거나 확인된 후에도 판매하는 행위
 - 회수명령을 받고 회수(폐기)한 것으로 속이는 행위
 - 질병치료.의약품 오인.체험사례 등 허위 광고 행위
- 지자체 관내 일상점검: 기본안전수칙 항목 위주 점검
 -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 지하수사용 수질검사
 - 방충.방서시설 기준
 - 제도가공실 위생적 관리
 - 자가품질검사
 - 이물 혼입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판매.조리.보관.냉장.냉동
 - 온도기준 미준수
 - 무등록(신고) 및 무표시
 - 음식물 재사용

- 사전예고제 실시 : 2주 이전에 인터넷, 문자, 일간지 등
- 위반사항 발생시
 - 위반사항은 시정 될 때까지 지속적인 반복 점검 실시
 - 위반업체는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 공개
 - 반드시 3개월 이내 재점검 실시하고 재점검 결과 위반 업체는 특별 관리
 - 위반된 제품이 회수·폐기 대상인 경우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유통된 제품은 회수·폐기토록 해당 기관에 신속히 통보
 -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중 계통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업체 및 제품 정보 등을 신속히 통보
- 할랄 표시.광고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인증 또는 보증의 표시를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
 -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신뢰성 있는 민간 또는 외국 정부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 액체질소(용가리과자) 등 인체 위해우려 첨가물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식품취급시설 점검 시 액체질소가 잔류되거나 주류 등에 드라이 아이스 등 사용행위에 대한 점검 실시
-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거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련정보를 관련기관에 통보